

# 2023학년도 교비학술연구비 사전 신청 여부 조사(2023. 9.월 접수 예정)

## 1. 목 적

가.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확보 및 교비연구 활성화  
나. 2023학년도 교비학술연구비 가신청을 통한 소요예산 파악 및 예산계획 수립

2. 조사기간 : 2023. 08. 30(수) ~ 09. 08(금)


3. 조사대상 : 전임교원

4. 2023학년도 교비학술연구비 신청 일자 : 9월 중 진행 예정

\* 가신청 수요에 근거한 교비학술연구비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오니, 전임교원들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구처장

[hnuabeek@hnu.kr](mailto:hnuabeek@hnu.kr) 계정 전환

 비공개



\* 표시는 필수 질문임

1. 소속(학과 또는 부서) \*

내 답변



2. 성명 \*

내 답변

3. 신청자격 \*

- 나는 교비학술연구비를 신청한 적이 없는 신임 교원이다. (신청자격 O)
- 2023 교비학술연구비 신청자격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자격 O)
- 2023 교비학술연구비 신청자격 제한에 포함된다. (신청자격 X)



### 2023 교비학술연구비 신청자격 제한

#### 1) 제한 기준

- 가) 이미 선정된 교비학술연구비에 의한 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자
- 나) 연구비를 지원 받았으나「교비학술연구비 지급 및 관리규정」제9조에 해당하는 자

#### 제9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1.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교를 퇴직할 때
2.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때
3.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을 받았을 때
5. 연구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할 때
6. 기타 연구자가 연구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때
7. 연구결과보고 제출기한으로부터 향후 1년 이내 제출하지 않았을 때
8. 교원업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실 학술단체 또는 부실 학술지에 게재된 실적  
으로 판정되었을 때

- 다) 연구년이 종료되고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연구실적물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자
- 라) 호봉승급이 중지된 자
- 마) 최근 2년 간 2개 학기 연속 책임시수 미충족자
- 바) 최근 2년 간 2개 학기 연속 주당 수업일수 미충족자

#### 「한남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38조(수업시간배정원칙) ① 전임교원의 수업시간은 4일 이상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강의를 주당 6시간 이상 담당하여야 한다.

#### 4. 2023학년도 교비학술연구비 사전 신청 여부 \*

- 0 (신청예정)
- X (신청안함)



5. 2023학년도 교비학술연구비 신청 구분 \*

- 일반
- 2023 신진연구 1
- 2023 신진연구 2
- 신청안함

2023학년도 교비학술연구비 신청 구분

1. 일반 :

100만원 이내 지급

가. 신진연구가 모두 완료된 전임교원

2. 2023 신진연구 1(신규임용 후 2년 이내 1회에 한함) : 600만원 지급

가. 2022.09.01이후 신규임용 정년계열 전임교원

나. 기존 교비학술연구비 를미신청한 정년계열 전임교원

3. 2023 신진연구 2(신규임용 후 5년 이내 2회에 한함) : 300만원 지급

가. 2022.09.01이후 신규임용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나. 기존 교비학술연구비를 미신청하거나 1회차만 완료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다. 신진연구 1회차(2년이내 1회)를 완료한 정년계열 전임교원)

6. 교비학술연구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답변

제출

양식 지우기

Google Forms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이 설문지는 한남대학교 내부에서 생성되었습니다. [악용사례 신고](#)

Google 설문지









